

#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문영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1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11월 2일  
발 의 자 : 문영민, 유찬중, 김정태,  
우창윤, 김광수(도봉),  
송재형, 성중기, 이순자,  
김용석(도봉), 김기대,  
김창수, 김혜련 의원(12명)

## 1. 제안이유

교육지원청과 지역교육청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던 용어를 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며, ‘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’의 당연직 위원에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제외하고,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함.(안 제6조제1항, 제7조제2항)
- 나.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회 위원에서 제외함.  
(안 제9조제2항)
- 다.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.(안 제2조제2호, 제3조제1항제5호, 제8조의2제1항제7호, 제9조제5항 등)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학교급식법」 제5조 (학교급식위원회 등)

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친환경 급식”을 “친환경급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“친환경농어업법””을 ““「친환경농어업법」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 중 “친환경 급식”을 “친환경급식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5호 중 “유관기관”을 “관계 기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지역교육지원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의 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제1항제7호 중 “유관기관”을 “관계 기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1호 중 “행정1부시장 및 학교급식업무”를 “학교급식업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해촉”을 “위촉 해제”로 한다.

제10조제4항 중 “가 정하는 바에”를 “에서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해태하거나”를 “게을리하거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행	개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정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친환경학교급식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 대상에게 <u>친환경 급식</u>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3. ~ 5. (생 략)</p> <p>6.“친환경농·수·축산물수급체계”란 농업인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<u>친환경농어업법</u>”이라 한다)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수산물·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.</p> <p>7. (생 략)</p> <p>8. “친환경유통센터”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가 운영하는 <u>친환경 급식</u> 식재료를 공급하는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친환경급식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“ 「<u>친환경농어업법</u>」 ”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 -----<u>친환경급식</u>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시설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시장은 제9조의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서울특별시 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”이라 한다) 등 <u>유관기관</u>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</p> <p>6. ~ 9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6조(지원 신청) ① 시장에게 급식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를 <u>지역교육지원청</u>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7조(지원대상자의 의무) ① (생략)</p> <p>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</p>	<p>제3조(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<u>관계 기관</u>----- -----</p> <p>6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지원 신청) ① ----- ----- ----- <u>교육지원청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지원대상자의 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<u>지역교육청</u>을 거쳐 교육감에게,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<u>교육</u> <u>지원청의 장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③·④ (생략)</p> <p>제8조의2(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실행)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</p>	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의2(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실행) ①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교육청, 자치구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<u>유관기관</u>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</p> <p>8. (생략)</p>	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----- <u>관계 기관</u>----- -----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	<p>제9조(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시 <u>행정1부시장</u> 및 <u>학교급식업무 담당 국장</u></p> <p>2. ~ 10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1. -- <u>학교급식업무</u> ----- -----</p> <p>2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⑤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<u>해촉</u>할 수 있다.</p>	<p>⑤ ----- ----- ----- <u>위촉 해제</u>-----.</p>
<p>제10조(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가 <u>정하는 바에</u>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<u>에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지도 감독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이 제7조의 의무를 <u>해태하거나</u>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, 필요시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1조(지도 감독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게을</u> <u>리하거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